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024호)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985호)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125호)
- 최보운·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495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7
-----------------	---

1. 경제적 착취의 정의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노인학대 신고의무, 거래지연조치 등 법적 근거 마련(김정호의원안 제1조의2제4호의2 등)	7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개호의원안 제39조의 15 신설 등)	15
3. 노인의 건강한 심신 보존을 위한 지원 강화(민홍철의원안 제27조의5)	25
4. 노인·장애노인 정의 및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최보윤·서미화의원안 제1조의2제1호의2 신설 등)	33

I. 개요

1.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02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0. 30.

(3) 회 부 일 : 2024. 10.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기술 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강해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움.

그런데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4호의2·제39조의6제2항제17호 및 제39조의22 신설).

2.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98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28.
- (3) 회 부 일 : 2024. 11.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필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와 임금 등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저평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탈로 이어져 돌봄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적 성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합리적인 처우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합리적 임금 수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 신설 등).

3.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12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

(3) 회 부 일 : 2024. 12.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하지만,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 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는 노인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4. 최보훈·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49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훈의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6.
- (3) 회 부 일 : 2024. 1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당사국은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복합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여야 함.

그런데 2022년 말 기준 국내 장애인구 중 고령화율이 52.8%로 조사되는 등 장애인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장애·성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법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준수를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 경제적 착취의 정의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노인학대 신고의무, 거래지연조치 등 법적 근거 마련(김정호의원안 제1조의2제4호의2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의2제4호의2, 제39조의6제2항제17호 및 제39조의2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1조의2(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경제적 착취”란 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완전한 의사표현에 기초하여 노인의 소득·재산·임금 등을 빼앗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생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16. (생략)

<신 설>

③ ~ ⑥ (생략)

<신 설>

② -----

-----. 다만, 제17호
에 해당하는 자는 경제적 착취
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한한다.

1. ~ 16. (현행과 같음)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그 임직원을 포함하
며, 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한다)¹⁾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2(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노인이 요청한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가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노인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와 관련된 통지·해제·내역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는 “노인”으로 본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으나, 경제적 착취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²⁾, 다만 「2024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을 보면 경제적 학대(착취)를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경제적 학대(착취)의 정의 및 판정지표 >

정 의	판정지표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자료: 「2024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한편, 개정안에서는 ‘경제적 착취’를 ‘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완전한 의사표현에 기초하여 노인의 소득·재산·임금 등을 빼앗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바, 업무수행지침과 비교시 ‘불완전한 의사표현에 기초하여’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치매 등의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2)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2023년 노인학대 10,638건 중 경제적 학대는 352건이지만, 학대자에 대한 의존·신뢰관계³⁾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낮은 신고율을 고려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착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⁴⁾⁵⁾.

< 유형별 노인학대건수(2019~2023) >

(단위: 건, %)

구분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2019	3,138	3,465	218	426	741	200	41	8,229
2020	3,917	4,188	231	431	760	223	53	9,803
2021	4,390	4,627	260	406	691	204	46	10,624
2022	4,431	4,561	259	397	689	169	36	10,542
2023	4,541	4,531	265	352	758	165	26	10,638

* 자료: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경제적 학대(착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0년 8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이 업무중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시, 거래처리 지연·거절 및 금융감독원·경찰 등 관계당국 등에 신고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가칭)노인금융 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경제적 착취의 개념 불분명,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한 금융업계의 반대로 현재까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면책 규정을 두고,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 2023년 경제적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자녀 등 친족에 의한 경우가 78.4%임.

4) 이현주, 노인은 왜 경제적 학대의 대상이 되는가, KCGAT 2021.3월 <오피니언 제7호>

5) 「2018 -2019 고령 소비자 보호에 관한 보고서」(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피해 고령자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고 믿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시설에 보낼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와 금지행위로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⁶⁾, 업무수행지침에서 판정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이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바, 경제적 착취 개념 정의의 실익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개정안(제39조의22)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거래지연 조치, 민사상 면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18호)에서도 동일한 내용⁷⁾을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규율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⁸⁾. 2020년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에서도 금융위원회는

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7)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5018) 비교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2205018)
제1조의2(정의) 4의2. 경제적착취	제2조(정의) 11. 고령금융소비자 / 12. 금융피해
제39조의6 제2항(신고의무자) 17.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제39조의22(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제1항(거래지연조치)	제32조의2(거래지연조치 등)
제2항(민사상 면책)	제32조의3(제3자에 대한 통보)
제3항(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준용: 고령금융소비자=노인 등)	제32조의4(민사상 면책)
제4항(국가의 경제적 착취 예방 노력)	제32조의5(고령금융소비자 보호시책 마련 등)

8)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2), 우리나라의 고령자 금융피해 관련 법률

피해 유형	관련 법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착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에 의해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친족·부양자 등에 의한 경우)
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필요시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 및 동법 하위규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불완전한 의사를 어디까지 볼것인지 명확한 범위가 없는 등 개념이 모호하여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어려움이 있어 개정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경제적 착취의 정의 중 노인의 불완전한 의사표현에 있어 불완전한 의사를 어디까지 볼것인지 명확한 범위가 없는 등 개념이 모호 - 미국의 예(“노인의 의사” 요건 없음)를 참고하여 경제적 착취를 법률에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착취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어려움이 있어 법 개정 실효가 없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전제되기에 앞서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효과적 대응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에 노인보호 필요에 따른 거래지연조치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에게 재량을 부여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민사상 면책을 주는 것은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됨.
은행 연합회	◦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증가 및 분쟁 발생 소지 등 부작용 초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제도 설계에 신중 검토 필요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개호의원안 제39조의 15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사회 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를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 신설 등)⁹⁾.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u><신설></u>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9조의20----- ----- <u>제39조의15(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

9)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2년 주기로 조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 3,400만원(연평균 1억 700만원) 이상으로 추계함.

제39조의15 ~ 제39조의21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요양보호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③ 국가는 <u>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요양보호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u> ⑤ <u>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u> 제39조의16 ~ 제39조의22 (중전제39조의15부터 제39조의21까
-------------------------------	---

제61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Heim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지와 같음)

제61조의2(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39조의18제9항-----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의18제5항-----

③ -----

-----.

1. 제39조의17제2항-----

2. 제39조의21제5항-----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 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 자·가족 ④·⑤ (생 략)	----- ----- ----- ----- ④·⑤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필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장기요양요원¹⁰⁾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해 처우와 임금 등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탈로 이어져 돌봄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자·등록자·근무자 비율 변화(2018~2022) >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65세 이상 인구		7,366,085	7,688,994	8,151,867	8,569,865	8,981,133
장기요양보험인정자		670,810	772,206	857,984	953,511	1,019,130
요양보호사	자격자	1,607,146	1,764,442	1,910,325	2,177,116	2,490,354
	등록자	390,904	457,548	488,879	557,001	622,801
	등록자/자격자	24.3%	25.7%	25.6%	25.6%	25.0%
	근무자	322,833	371,103	407,329	470,655	529,316
	근무자/자격자	20.1%	21.0%	21.3%	21.6%	21.3%

* 출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건강보험연구원, 2023),
「2022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수급차 전망(2023~2028) >

(단위: 명, 가구,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수요	566,954	610,042	666,513	716,501	758,775	803,161
공급(근무)	640,116	652,902	662,751	673,054	679,755	686,427
수급차	73,162	42,860	△3,762	△43,447	△79,020	△116,734

* 출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건강보험연구원, 2023)

□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건강보험연구원, 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자(2,490,354명) 중 21.3%인 529,316명만이 근무하고 있고,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수요를 공급이 충족하지 못하여, 2028년에는 11만 6,734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지역별로는 경북(△18,893명)-전남(△17,461명)-전북(△14,269명)-충남(△12,594명) 순으로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의 요양보호사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92.6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2022년 기준 209시간 근무 최저임금 191만4,44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러한 열악한 처우 문제는 요양보호사 수급전망을 보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 월평균 근무시간·임금(2022.4.~6.) >

(단위: 시간, 만원)

구 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평 균
월평균 근무시간	92.6	167.4	156.8	160.3	100.5
월평균 임금	117.0	213.3	199.0	218.8	127.1
시간당 임금	1.26	1.27	1.27	1.36	1.26

* 출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러한 현실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등 합리적인 처우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 요양보호사를 보호하여 초고령화 사회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2. 4. 20.)에서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등을 권고한 바도 있음.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¹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급여유형별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지출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별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요원 처우 관련 조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4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 한편, 기본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적계약을 통해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겠고, 그 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

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포하도록 하고 있음¹²⁾).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 및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유사한 내용이 기시행 중이고, 장기요양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급여비용 내에서 종사자와의 사적 계약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행위 등에 대한 수가 지급체계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서도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인건비 기준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한 심신 보존을 위한 지원 강화(민홍철의원안 제27조의5)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급식최저단가를 반영한 급식 지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건강한 심신 보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7조의5(건강한 심신의 보존)</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3. 체력 향상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노인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개정안은 노인의 건강한 심신 보존을 위해 국가 등으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급식지원 시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급식최저단가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노인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금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현행 「아동복지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¹³⁾.

□ 첫째, 급식지원과 관련된 사항임. 현행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근거하여,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사업(경로당 식사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수행되고 있음¹⁴⁾¹⁵⁾.

13)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14)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로당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2024.4.30.)

15) 「노인복지법」이 2024년 12월 20일 개정되어 경로당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음.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시행 2026. 1. 1.]

<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

구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급식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59세의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59세의 자 등
급식 기관	◦ 경로식당(일일평균이용자 수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급식/지역여건 고려시 이용자 20인 이상[읍·면지역 10인 이상], 주1회 이상 급식 가능)	◦ 밥, 국, 밑반찬, 죽 등 가정식·치료식(당뇨병, 고혈압) 등 제공
비용 징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무료, 그 외 실비	

* 자료: 「2024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하지만, 노인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급식단가가 낮고¹⁶⁾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 단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24년도 지역별 급식 단가 현황 >

(기준: 2024. 5. 31. 기준 / 단위: 원)

시 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울특별시	4,000~5,500	4,000~6,000
부산광역시	3,500~4,000	3,500~4,000
대구광역시	3,500	2,300~14,500
인천광역시	3,500	3,500
광주광역시	4,000	4,000
대전광역시	4,000	4,000
울산광역시	3,500	4,000~5,500

16) 「2022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보장 강화 방안 연구」(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급식단가는 지역아동센터·요양원 2,496원, 어린이집 1,900원, 초중고 3,046원, 군대 3,500원, 정부·공공기관 2,452원 등으로 조사되었음.

세종특별자치시	미운영	5,000
경기도	4,000	4,000~8,000
강원특별자치도	3,000~6,000	3,500~11,000
충청북도	3,500~5,000	2,500~9,500
충청남도	3,500~5,000	3,500~20,000
전북특별자치도	4,000~4,500	5,000~6,000
전라남도	5,500	5,500
경상북도	4,000	4,000
경상남도	3,300	2,500~15,000
제주특별자치도	5,500	5,500

* 도시락 단가는 지역별로 1일분 또는 3~5일분을 제공하거나 단백질 음료 등을 추가로 제공, 배달료 지원 등 구성이 다양하여 단가의 범위가 넓음

* 자료: 보건복지부

□ 노년기에 영양을 갖춘 식사가 가져다주는 신체적·정신적 이점을 고려할 때,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이 초고령사회에서도 가급적 많은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게끔 하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¹⁷⁾는 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다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수행중이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상담과 치료와 관련된 사항임. 금번 개정안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보면,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예방교육, 건강진단 등의 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7)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 의미하는 것-」(이슈와 논점 제224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6. 12.)

< 의료 관련 현행 「노인복지법」 규정 >

제27조(건강진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제1항 제2호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규율 중인 급식 사업의 직접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2005년 지방이양되어 지자체 자치사무에 해당하느냐, 조문 내용에서 ‘국가’는 제외될 필요가 있고, ‘급식지원 등’을 제외한 제1항·제3항의 내용은 실체적 내용이 부족해 노인복지법 제4조의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7조의4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으로 취지 달성 가능해 입법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제1항 제2호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규율 중인 급식 사업의 직접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2005년 지방이양되어 지자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바, 조문 내용에서 '국가는 제외될 필요 ◦ 또한 '급식지원 등'을 제외한 제1항제3항의 내용은 실제적 내용이 부족해 노인복지법 제4조의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7조의4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으로 취지 달성 가능해 입법필요성이 낮음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27조의4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 체육 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상 노인 체육의 진흥, 체력 인증 관련 조문과 실질적 내용이 중복되는 개정안 조문 수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 '24년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으로 840개소(종목별 체육교실 620개소, 체력관리교실 220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체력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규정함(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 * 현재 전국 76개소의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중심으로 연령별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 전국민 대상 체력향상 업무수행 중
기획 재정부	◦ 사회 복지 성격의 노인·장애인·아동 복지관 운영은 지자체 사무이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 또한 '05년 지방이양 * 영 [별표2]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 재정과 함께 지방이양되어 보조금법에 따라 지급 제외된 사업을 국비로 지원할 경우, 재정규율과 맞지 않게 되고 과도한 국가적 부담 초래

4. 노인·장애노인 정의 및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최보윤·서미화의원안 제1조의2제1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하면서, 노인 중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장애노인으로 새로이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성별,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의2 신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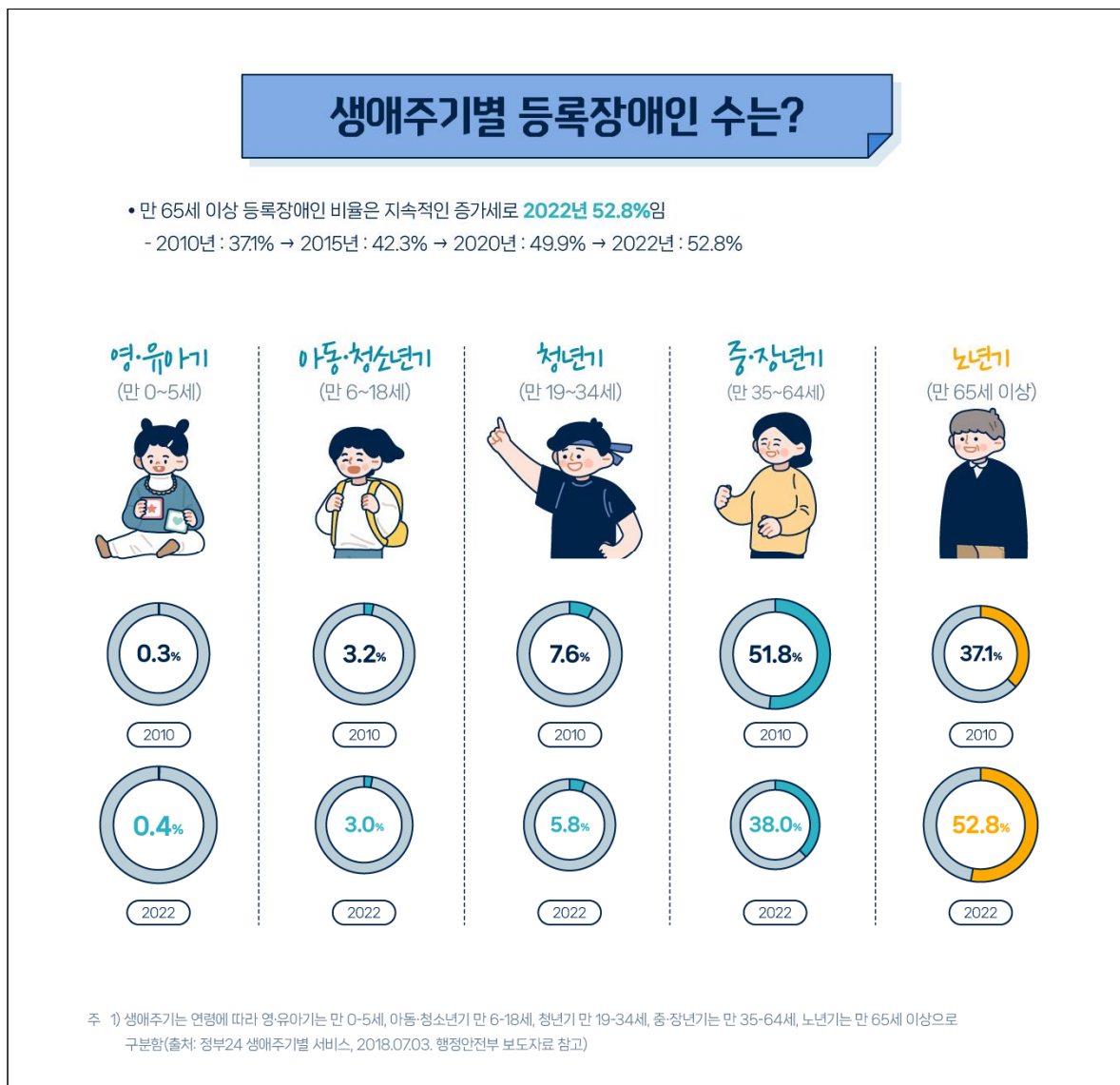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신설></u> <u><신설></u> 1. (생략) 2. ~ 5. (생략)	제1조의2(정의) ----- -----.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1의2. “장애노인”이란 노인 중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자를 말한다. 1의3. (현행 제1호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성별,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u>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u>
--	--

나. 주요 검토 사항

- 2022년 말 기준 국내 장애인구 중 고령화율이 52.8%로 전체인구 고령화율 18% 보다 3배 높은 수치임. 장애인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 노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생애주기별 등록장애인 수 (KODDI 통계 뉴스레터 2023년-2호) >



□ 개정안은 연령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악화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의료, 소득, 활동지원 등)을 고려하여, 장애노인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법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대한 준수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음. 참고로, 2008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복합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노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여야 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노인·연령 관련 조항 >

전문

본 협약의 당사국은,

(p)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국적, 인종적, 토착적 또는 사회적 배경, 재산, 출생, 연령 혹은 기타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악화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염려하며,

제8조 인식 제고

(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 근절;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2. 당사국은 또한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 및 개호인을 위한 적절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보조 및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보조 및 지원에는 착취, 폭력과 학대를 피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통한 방식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장애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인들의 신체, 인지 및 심리적 회복, 재활과 사회재통합을 증진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제25조 건강

(b) 조기 발견과 적절한 예방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특히 장애로 인한-의료 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한 이차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8조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b)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소녀, 노인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첫째, 개정안에서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인 자’로 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노인 중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장애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관련 규정은 해당 조항에 산재되어 적용되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학대관련범죄(제1조의2제5호), 경로우대(제26조), 건강진단(제27조) 등의 규정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 노인연령 규정 >

구 분	연 령 기 준
노인학대 관련범죄(제1조의2 제5호)	65세
생업지원(제25조)	65세
경로우대(제26조)	65세
건강진단 등(제27조)	65세
상담·입소 등의 조치(제28조)	65세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제33조의2)	60세
금지행위(제39조의9)	65세

□ 이러한 현행 규정을 고려할 때,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법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가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¹⁸⁾되고 있는바, 노인의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노인들은 노년기 시작 연령을 평균 71.6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2020년 실태조사의 70.5세보다 1.1세 높아진 결과임.

□ 둘째, 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성별,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과 관련된 것임. 금번 규정은 건강기능이 저하되고 의존성이 높아지는 ‘노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경험이 가장 높은 것은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로 14.0%로 나타났고, 대중교통 이용 12.6%, 의료시설 이용 8.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관련 입법례로서 「아동복지법」(제2조제1항)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연령’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장애노인’ 정의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이슈와 논점 제189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11.23.)

<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 >

안 제1조의2항 제1호 노인 연령기준	◦ 노인복지법 등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며, 고령자 관련 제도 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연령 기준을 두고 운영 중으로 노인연령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필요 * 경로우대 : 노인복지법 제26조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 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아울러,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변화되는 인식**,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가중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에 우려 등으로 노인지원제도 대한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 제기 * 기대수명: '70. 62.3세 → '90. 71.7세 → '00. 76.0세 → '10. 80.2세 → '22. 82.7세 **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 평균 71.6세 (2023년 노인실태조사) ◦ 동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1조의2항 제1의2호 장애노인 정의	◦ 노인복지법의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노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동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음 * "장애아동" 정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규정
안 제4조제4항 노인차별 예방 시책	◦ 노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현재 노인복지법 제2조의 '기본이념',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등으로 취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99